

GRUNDFOS Operations A/S
August 13, 2019

Poul Due Jensens Vej 7, DK-8850 Bjerringbro
Ref. E-mail: focus-list@grundfos.com
VAT-No.: 35817352

www.grundfos.com
Our Ref.: Grundfos PCC Team
Ref. E-mail: focus-list@grundfos.com
www.grundfos.com/focus-list

공급사 귀중,

다음 정보는 제한 물질에 대한 규제 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위한 펌프 제조사로서 당사는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되는 구성품과 재료가 모든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룬포스의 공식 광물 소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글로벌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통합된 의무 규정을 수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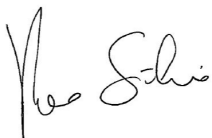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에 규제 준수 데이터 1:1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솔루션인 CDX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우리 제품의 규제 준수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다 현명한 방법이자, 고객 문의에 보다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CDX는 IMDS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므로 IMDS 사용자는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첨부한 가이드에 따라 CDX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귀하를 공식적으로 초대합니다. 회사 등록을 완료하시면 추가 지침이 제공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undfos Operations A/S



Silvio Vanzo
Group Senior VP, Group Purchasing

Grundfos Holding A/S



Katrina Sonne Eihorn
Director, Product Compliance

분쟁 광물 신고

분쟁 광물 신고는 광물 이니셔티브의 공식 분쟁 광물 신고 템플릿(RMI CRMT)을 이용하여 CDX 시스템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 템플릿은 RMI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conflict-minerals-reporting-template/

CDX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귀사의 분쟁 광물 사용에 관한 설문지(CMD 요청)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전술한 RMI CRMT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RMI CRMT가 있을 경우, 신고서를 CDX로 가져올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설문지를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규제 요건 신고

규제 요건 신고는 CDX를 통해 수행됩니다. REACH, RoHS 및 California Proposition 65와 같은 규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설문지(MDS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포스 포커스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는 귀사가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제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포커스 리스트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포커스 리스트에는 다음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REACH (1907/2006/EC)
 -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SVHC의 신고 및 단계적 폐지.*
 - 별첨 XIV 및 XVII 준수.
- EU RoHS directives (2011/65/EU and 2015/863/EU)
 - 기사용된 EU RoHS 면제 대상 신고.
- Resolution MEPC.197(62) (Hong Kong Convention/IMO)
- China RoHS (MIIT Order 32)
-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s; ODS (1005/2009/EC and 2037/200/EC)
-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Regulation; GHG (517/2014/EC)
- Batteries Directives (2006/66/EC and 493/2012/EC)
- Packaging Directives (94/62/EC and 2004/12/EC)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gulation; POPs (850/2004/EC)
- California Proposition 65; PROP65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PROP65 물질 신고.

*** SVHC의 단계적 폐지는 그런포스에 특화된 이니셔티브입니다. 납의 RoHS 면제가 유효한 기간까지는 납(CAS:7439-92-1)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가 면제됩니다.**

현재 귀하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되는 물질과 면제 대상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물질 레벨에서 재료 신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료 신고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회사는 부담없이 CDX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